KB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(공)21-904호(2021.9.15.)

ISO 37001 인증기관(취득일: 2018.10.23.)



「KB e-plus 정기예금」상품설명서

-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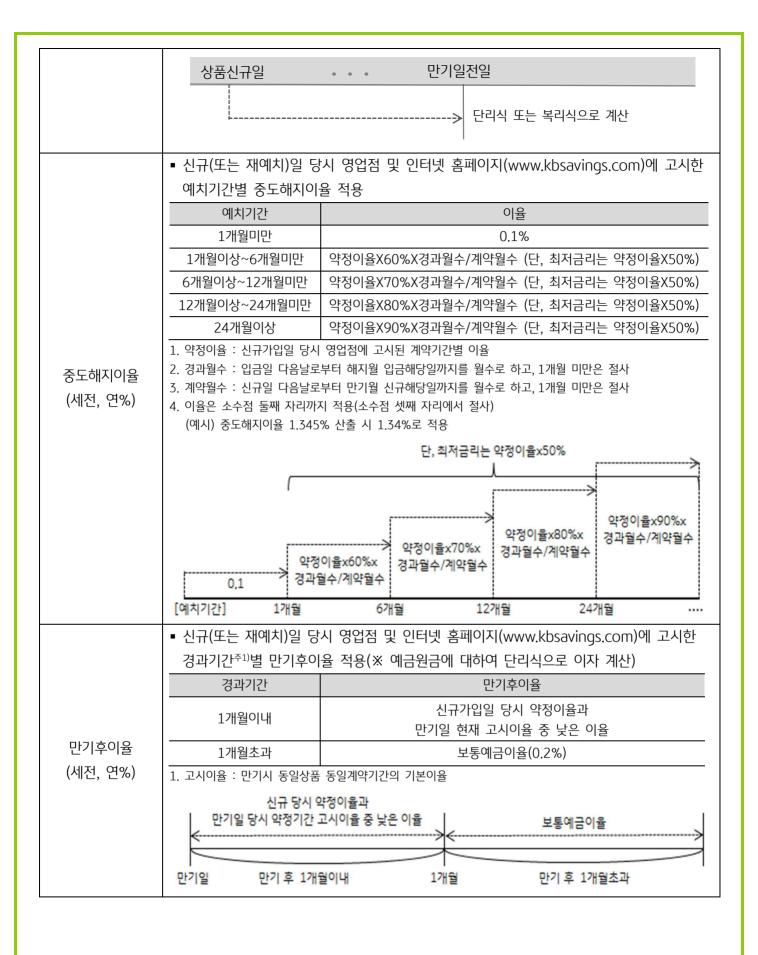
■ 상 품 명: KB e-plus 정기예금

■ 상품특징 : 확정금리로 높은 수익을 누리는 온라인 가입전용 정기예금

2 거래 조건

(2022.12.16.기준, 세전, 연%)

						\-	.022.12.10.	, "L, L'',	
구 분	내 용								
가입대상	■ 실명의 개인								
가입기간	■ 3개월 ~ 36개월(월 단위, 일 단위)								
가입금액	■ 100만원 이상								
이자지급시기	■ 만기일시지급식(월복리식): 매월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만기시 원금과 함께 지급								
	■ 매월이자지급식(단리식): 매월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여 매월 약정일에 지급								
가입방법	■ 인터넷뱅킹, kiwibank								
해지방법	■ 영업점 방문, 인터넷뱅킹, kiwibank								
	■ 신규(또는 재예치)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avings.com)에 고시한								
	계약기간별 이율 적용								
적용이율	■ 최저 연 3.5% ~ 최고 연 5.4%								
(세전, 연%)	기간		3개월	6개월	17	2개월	24개월	36개월	
	적용이율		3.5%	4.2%	5.4%		4.7%	4.8%	
	복리수익률		3.510%	4.236%	5.535%		4.917%	5.151%	
	■ 신규(또는 재예치)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하여 지급 (원미만 절사)								
이자계산방법	구분	이자계산식							
(산 출근 거)		월 단위				일 단위			
(세전)	단리식	원금X이율X월수/12				원금X이율X일수/365			
	복리식	원금X{(1+이율/12) ⁿ -1} (n은 경과월수)				(원금+월복리이자)X이율X일수/365			



세제혜택	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가능: 전 금융기관 합산하여 1인당 5,000만원 이내 가입대상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(자동재예치) 분부터 「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(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)」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,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. ※ 관련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담보제공	■ 가능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이내로 가능)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	■ 계좌에 <u>압류주1</u>), <u>가압류주2</u>), <u>질권주3</u>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주1) 압류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 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 주2) 가압류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주3) 질권설정: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(담보물 소유자)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(예·적금, 채권 등)인 경우에 활용됨
예금 해지 시 불이익	■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분할해지	■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4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 (단, 분할해지 후 잔액은 100만원 이상 유지)
자동재예치 (원금)	■ 신청고객에 한하여 만기일 당일 고시한 기본이율을 적용하며, 금리를 제외한 가입조건은 기존 가입조건과 동일하게 원금부분만 재예치 및 이자금액은 지정계좌(타행 포함)로 입금(최대 3회까지 가능, 계좌번호는 동일함) ※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자금액은 만기일 직전 영업일에 입금되며, 자동재예치 처리는 만기일 다음 영업일에 처리하되, 재예치 신규일은 직전 만기일로 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신청은 신규일부터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신청 가능하나,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만기일 2영업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예시) 만기일이 토요일, 일요일인 경우 목요일까지 신청 가능
만기 자동해지	■ 신청고객에 한하여 만기시 자동해지 및 본인명의 지정계좌(타행 포함)로 전액 입금 ※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처리
연계·제휴서비스	■ 해당사항없음

예금자보호여부	해당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^{1인당최고 5천만원}	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			
위법계약해지권	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, 거절 시에는 <u>거절사유와 함께 통지</u> 하여야 합니다. ■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				
이용제한 사항	■ <u>자동해지와 자동재예치는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.</u> ■ <u>본 예금에 법적지급제한 등 사고신고가 등록되어있는 경우 자동해지/자동재예치가 불가합니다.</u> ■ <u>예금잔액증명서 발급당일에는 입금·출금·이체 등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.</u>				

3 유의 사항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19조 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, 제3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본 설명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

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(1899-0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bsavings.com),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(국번없이 1332) 또는 e-금융민원센터 (www.fcsc.kr)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영업점 등을 통해 저축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 제 1 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